

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·행위의 범위,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·기준
(제18조의2제3항 관련)

1.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

대상시설·행위의 범위	설치지역	설치조건·기준
가. 노천채굴	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. 다만, 고령토의 굴취·채취(그 굴취·채취로 인하여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경관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, 산지일시사용 후 발생하는 절토·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)는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도 할 수 있다.	1)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별표 4 제1호(마목3)·4)·6)·10), 제2호(다목1) 및 제2호(라목1)·2)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2)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이고,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100㎡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% 이하일 것 3)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.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가)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나) 산업통상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)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
나. 굴진채굴	제한없음	1)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별표 4 제1호(마목3)·4)·6)·10), 제2호(다목1) 및 제2호(라목1)·2)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2)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3)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

다. 광해방지사업		1) 별표 4 제1호·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별표 4 제1호(마목3)·4)·6)·7)·10), 제2호(다목1) 및 같은 호 라목1)·2)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2)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이루어질 것
-----------	--	---

2. 배전시설·전기통신송신시설·태양에너지발전시설·풍력발전시설·풍황계측시설·궤도시설, 매장유산 발굴의 경우

대상시설·행위의 범위	설치지역	설치조건·기준
가. 배전시설·전기통신송신시설·풍황계측시설	제한없음	1) 별표 4 제1호·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별표 4 제1호(마목3)·6)·10) 및 같은 표 제2호(다목1) 및 같은 호 라목1)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2)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가)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나)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3)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·모노레일·헬기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. 다만,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4) 삭제 <2018. 10. 30.>
나. 태양에너지발전시설	준보전산지	1)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별표 4 제1호(마목8)·11)·15) 및 같은 표

		<p>제2호다목1)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p>2)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</p> <p>3) 산림청장등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,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</p> <p>4) 폐기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처리계획 및 토양오염 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</p> <p>5) 토사유출을 방지하고, 산지경관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하단 주변의 서식환경에 적합한 수목·초본류 및 덩굴류(침은 제외한다) 식재계획을 수립할 것</p> <p>6)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7)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·점검·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</p>
<p>다. 풍력발전시설</p>	<p>제한없음</p>	<p>1) 별표 4 제1호·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별표 4 제1호다목3)·6)·7)·10) 및 제2호다목1)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2)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. 다만,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.</p>

		<p>3)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않을 것. 다만,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4) 산림청장등이 재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,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</p> <p>5)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중심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. 다만, 해발고 300미터 이하의 산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6) 진입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(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제외한다)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7)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·점검·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</p>
라. 궤도시설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	<p>1)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별표 4 제1호마목3)·6)·10) 및 제2호라목1)·2)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p>2)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 등의 운반에 관하여는 가목3)을 적용한다.</p>
마. 매장유산의 발굴	제한없음	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별표 4 제1호마목3)·6) 및 10)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

		다.
--	--	----

※ 비고

1.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.
2.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·행위의 범위에는 폐석 적치, 산물의 선별·가공·처리를 위한 시설·행위를 포함한다.
3. 삭제 <2013.12.17>
4.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5.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·행위의 범위,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·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6.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·행위의 범위,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·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.
- 6의2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7.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